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2드단6264 위자료 등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명욱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선
변 론 종 결 2013. 3. 19.
판 결 선 고 2013. 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9년경 피고의 권유로 불교용품점을 운영하게 되면서, 피고와 사실혼관계를 시작하여 2010년 11월경까지 사실상 부부로 지내왔다. 원고는 내조 및 사업운영으로 인한 소득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 명의의 재산형성에 기여하였으나, 피고는 사실혼 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등 피고의 유책사유로 결국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99년경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적어도 2007년 6월경까지는 관계를 유지하였다.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정교관계를 맺어 왔고, 피고의 누이 명의로 임대받은 양산시 소재 C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기도 하였다.

2) 피고는 1999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기간 동안 중국 등 해외로 출국하면서 원고와 동행하였다.

3) 피고는 1974. 7. 15.부터 2005. 5. 3.까지 ***중 소속의 승려였는데(피고는 1999. 1. 15.부터 2001. 7. 15.까지는 ***중 D에 소속되어 있었다.), 2005. 5. 4. 제적되었다. 피고는 **중에 소속되어 있던 기간부터 현재까지 양산 소재 E의 주지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는 위 E가 소속되어 있는 사단법인 **중의 종정 직분을 맡고 있다.

4)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F과 사이에 자녀 둘을 두고 양육비를 지원하여 왔다.

5) 원고는 피고의 누이로부터 사업체 운영 등의 목적으로 1억 원을 빌려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8호증, 15, 16, 17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G, H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종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사실혼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실혼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피고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피고는 승려의 신분이었고, 비록 소속 종파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만나던 기간 동안 일부 수행기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E의 주지로 재직하여 왔다. 피고가 위 직분을 유지하면서 원고와의 실질적인 사실혼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사찰 및 신도를 관리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와 피고는 혼인식을 치루지 않았고, 양가의 친지들에게 혼인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진지하게 알리지도 않았다. 피고의 자녀들이 원고를 피고의 새로운 배우자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③ 원고와 피고는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던 동안에도 같은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원고의 거소를 주된 생활장소로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

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사찰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주로 기거하면서 원고를 만나온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사실혼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면, 경제문제 등 가사 전반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여 처리하거나, 서로의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였을 법한데, 그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세용